제20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

기 념 사

2026. 11. 23. (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억 원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제20회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법집행기관 관계자분들,

금융정보분석원의 **역대 원장님**들,
그리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님과
금융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그동안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자금세탁방지 **업무 유공자**로
표창을 받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수상자 외에도 **현장**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Ⅱ. 자금세탁방지제도 의의 및 개선과제

금융을 국가경제의 혈맥이라 한다면,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그 혈맥에 **범죄자금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와 신뢰를 유지시켜 주는
면역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특금법 제정**과 **FIU 출범** 후,
국제기준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며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2001년에 의심거래보고(STR),
2006년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제도**(KYC)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AML **규율체계에 편입**하는 등,
최근 부각되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위험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도 변화에 부응한 **제도이행 성과**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05년 1만3천건에 불과하던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2025년에는 무려 **133만건**으로 증가하고,
AML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보고책임자와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FATF 정회원** 가입,
2015년 FATF 의장국 수행을 거쳐,
2024년 **FATF 상호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선진국의 일원으로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 정규 후속점검(Regular Follow-up) 등급

모두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FIU는
보다 완성도 높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올해 4월 FATF 장관 선언**에서
사기범죄를 국제적 대응과제로 강조한 만큼,
날로 조직화·고도화되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를 바탕으로,
중대민생침해범죄 전반에 대한 **거래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범죄 **의심거래에 대한 분석 업무를 넘어**
해당 거래에 **사용된 계좌를 신속히 정지**하고,
범죄수익을 보다 빠르게 환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FATF 총회**에서는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8월 개정한 특금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고위험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으로의
자금이전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금세탁방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FATF는 **법인과 신탁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법률, 회계, 세무 등의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을
주요 취약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법인과 신탁의 실소유자 정보를 철저히 확보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자금세탁의 취약고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Ⅲ.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금융회사의 철저한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금융당국의 정밀한 분석과 제도개선,
법집행기관의 엄정한 대응이라는
유기적 협력이 있어야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상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도 일선에서
묵묵히 자금세탁방지의 소임을 다하는 모든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